

2022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화성외국인보호소 2022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6월 16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1. 채용예정 직종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화성외국인 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2명	조리 및 조리와 관련된 제반업무	채용일시~1년 (무기계약 전환가능)
화성외국인 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1명	조리 및 조리와 관련된 제반업무	채용일시~22.12.31

2. 근로 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 결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 채용일시 ~ 채용일시로부터 1년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평정 등에 따라 재계약과 무기계약 전환 가능

- 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채용
- 채용일시 ~ 2022.12.31.

※ 원 근로자의 휴직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성 있으나 질병 휴직 대체자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다. 보수 수준

- 월 고정급 : 2,201,080원

- 명절휴가비 : 연 1,000,000원
- 맞춤형 복지비 : 연 400,000원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라. 근무시간 : 06시 30분부터 19시까지(격일근무로 근무일 다음날에 휴무)

※ 근무형태는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주5일제 근무로 변경될 수 있음(보수변경 수반)

3. 응시대상 및 자격요건 (공통)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만 60세)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신체건강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군필 또는 면제인 자

라. 학력 및 경력 : 제한사항 없음

마. 생활근거지 : 화성외국인보호소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기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솔향리 215-7)

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적격판정을 받은 자

4. 우대사항 (서류전형만 적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저소득층의 가점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저소득층(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 응시자가 군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 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관련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보훈포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나.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관련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이상) 우대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 자격 및 제출서류 등이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리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조리업무 수행 의지력 등으로 평가

6.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채용공고	2022. 6. 16.(목) ~ 2022. 6. 23.(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2. 6. 16.(목) ~ 2022. 6. 23.(목)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 동기 우편 접수(택배 접수 불가)	방문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 6. 24.(금)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2. 6. 27.(월)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22. 6. 28.(화) 16: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합격자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2022. 6. 29.(수)	· 화성외국인보호소 2층 관리과	

* 우편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슬항리215-7)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
(우편번호 : 18538) 겔봉투에 “응시원서” 표기

※ 채용예정인원 대비 응시자가 5배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 수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결과 채용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일정은 개별통보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① 응시원서 1부 (필수)
-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필수)
-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필수)
- ④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필수)
-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필수)
- ⑥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⑦ 조리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⑧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⑨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관련 증빙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고 국가유공자 등 관련 증빙서류는 보호처에서 발급(최근 3개월을 초과한 증명서는 불인정)

※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음

나. 합격자 등록 시

- ①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납자에 한함, 병역사항이 반드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②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1부
- ③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보건증 각 1부
- ④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2매(최근3개월 이내 촬영)

8. 참고사항

- 가.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20분전까지 화성외국인보호소 면접장소에 도착·대기하여야 합니다.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해 당일 배부함)
-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기간제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기관 판단에 따라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공고 시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T.031-8055-7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7.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

(붙임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2022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화성외국인보호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응시번호	2022-03-02-	성명	(한글)
응시분야	조리원		(한자)
		생년월일	
현 주 소	(-)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 -		
○ 상기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보유기간 경과시 폐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한다.
-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요령》

- ①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변경금지[기간제근로자(조리원)]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응시번호	2022-03-02-	응시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조리원	성명	
2022 년 월 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담당자의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에는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관리과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 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붙임 2】

【 이 력 서 】

1. 기본정보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성별 :)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기타 연락처)	
E-mail		
현 주 소		

2.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동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지 원 자 : _____(인)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

2022.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서명란은 반드시 자필서명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5년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생년월일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5년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2 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기간제 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 성년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있음 ☐ 없음 ☐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있음 ☐ 없음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있음 ☐ 없음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음 ☐ 없음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202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생년월일	. . .		

본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 시행하는 2022년도 제3회 기간제근로자 (조리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실시하는 자격,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